

[**Employers**: This is a sample employee notice employers can use to inform their employees about earned sick and safe time as required under [Minnesota Statutes § 181.9447, subdivision 9](https://www.revisor.mn.gov/laws/2023/0/53/laws.12.1.0#laws.12.1.0). Instructions for completing this notice are in brackets. Delete all instructions before providing this to the employee.]

# 유급 병가 및 안전 휴가에 관한 고용인 고지

미네소타 내 고용인은 유급 휴가의 한 형태인 유급 병가 및 안전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. 고용인에게는 근무 시간 30시간마다 최소 1시간, 연 최대 48시간의 유급 병가 및 안전 휴가가 누적됩니다. [If you are using a more generous accrual system or a front-loading system, edit the previous sentence and insert the applicable system for the employee who will receive this notice.] 고용인의 누적되는 유급 병가 및 안전 휴가의 1년은 다음과 같습니다: [Note here how you define the accrual or benefit year for the employee. Examples include the calendar year, year by work anniversary or another 12-month period.]

고용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유급 병가 및 안전 휴가와 함께 가장 최근 급여 기간에 사용된 유급 병가 및 안전 휴가는 각 급여 기간이 종료될 때 고용인에게 제공되는 고용인의 소득 명세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. 유급 병가 및 안전 휴가는 고용인이 직장에서 받는 것과 동일한 시간당 요율로 지급되어야 합니다. 고용인은 유급 병가 및 안전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근무 시간을 대체할 인력을 구하거나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. 필요에 따라 근무 시간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유급 병가 및 안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유급 병가 및 안전 휴가는 다음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* 고용인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질병, 치료 또는 예방적 진료
* 고용인 가족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질병, 치료 또는 예방적 진료
* 고용인 또는 그 가족에 대한 가정 폭력, 성폭력, 스토킹으로 인한 결근
* 날씨 또는 공공 비상사태로 인해 고용인의 직장이 폐쇄되거나 날씨나 공공 비상사태로 인해 그 가족의 학교 또는 돌봄 시설의 폐쇄 및
* 고용인 또는 그 가족이 타인에게 전염병을 감염시킬 위험이 있다고 보건 당국이나 의료 전문가가 판단한 경우

## 고용주에게 통지, 서류

고용주는 고용인에게 가능한 경우(예: 고용인이 사전에 의료 예약을 한 경우) 병가 및 안전 휴가 사용 전 최대 7일 전에 사전 통지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고용주는 또한 고용인이 3일 이상 연속으로 병가 및 안전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, 유급 병가 및 안전 휴가를 사용하는 사유에 관한 특정 서류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[The following is an example of an employer policy for employees to provide notice before using earned sick and safe time. Edit the following text to match your company’s policy.] 고용인이 진료, 예방적 진료 또는 사전에 알고 있는 다른 허용 가능한 사유를 위해 유급 병가 및 안전 휴가를 사용할 계획인 경우, 가능한 한 미리, 최소 [number between one and seven]일 전에 [phone, email or other communication](으)로 [name or position]에게 알려 주십시오. 고용인이 사전 통지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고용인은 근무가 불가능한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[phone, email or other communication](으)로 [name or position]에 연락해야 합니다.

## 보복, 민원 제기 권리

고용주가 허용 병가 및 안전 휴가를 사용 또는 요청한 고용인에게 또는 법에 따라 허용 병가 및 안전 휴가 권리를 행사한 고용인에게 보복하거나 부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에 위배됩니다. 고용인은 유급 병가 및 안전 휴가와 관련해 보복을 당했거나 부적절하게 거부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, 미네소타 노동산업부(Minnesota Department of Labor and Industry)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고용인은 또한 병가 및 안전 휴가 위반에 대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.

**상세 정보**

미네소타 노동산업부 노동표준국(Labor Standards Division)에 651-284-5075 또는 [esst.dli@state.mn.us](mailto:esst.dli@state.mn.us)로 연락하거나 해당 부서의 유급 병가 및 안전 휴가 웹페이지 [dli.mn.gov/sick-leave](https://dli.mn.gov/sick-leave)를 방문하십시오.

이 문서에는 귀하의 고용 형태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담겨있습니다. 이 정보를 받기를 원하시는 언어의 왼쪽 상자에 체크해 주십시오.

